



외국인 여러분께!!

외국인 주민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주민기본대장법」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주민의 주민기본대장제도가 시작됩니다!!

《외국인등록법은 폐지됩니다》

2012년 7월  
시행 예정



총무성

#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외국인주민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외국인주민분들의 편리성의 향상이나 시읍면등의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는것은,  
2012년(헤세이24년) 7월경 예정입니다.  
동시에, 외국인등록법은 폐지됩니다.

외국인 주민의  
편의성이  
이렇게  
향상됩니다.

1.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세대  
전원이 기재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등)가,  
발행 가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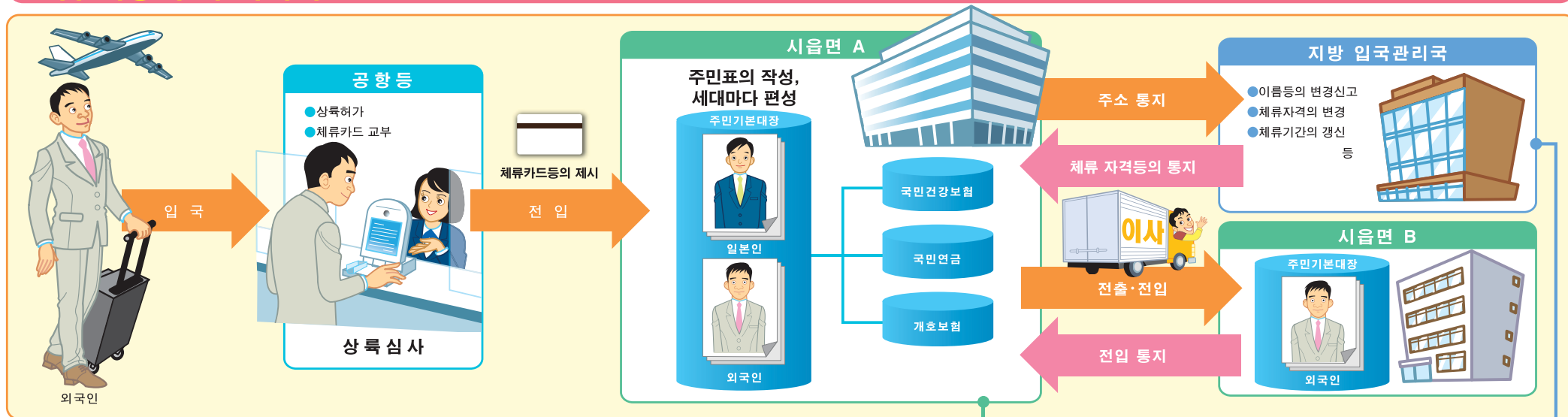


2. 주소변경의 신고에 의해,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등의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종래에 비해 신고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변경에 대해서,  
종래, 지방 입국관리국과 시읍면의 양쪽  
모두에 필요했던 신고가 지방  
입국관리국만의 신고로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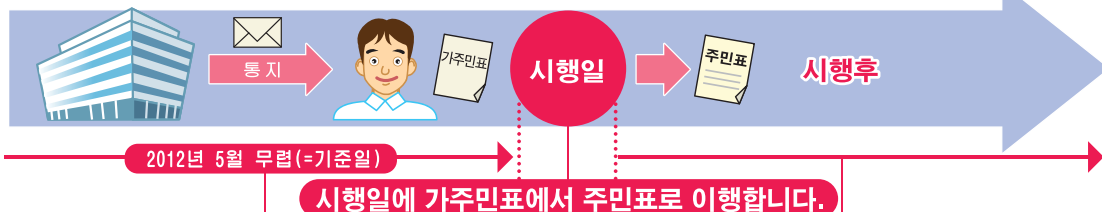


## 법 개정 후의 이미지



## 신제도에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인등록제도로부터 주민기본대장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읍면에 대해 임시주민표를 작성해,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거주민표는 시행일에 주민표가 됩니다.



### (1) 기준일에 있어

- ① 시읍면의 외국인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 ② 시행일에 있어 해당 시읍면의 외국인 주민에 해당된다고 전망되는 외국인의 양쪽 모두의 조건을 채우는 외국인주민에게 대해서, 거주민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민표의 기재사항은 외국인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거주민표의 기재가 실재와 다른 경우는,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한 변경신청등의 소정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2) 기준일 후,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상기 ①②의 양쪽 모두의 조건을 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같은 거주민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기초로 거주민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한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 (3) 원쪽의 수속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서, 시행일에 외국인 주민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주민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행일 직전의 입국등에 의해, 시행일에 주민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시행일 후 14일 이내에 이름, 주소등의 신고를 시읍면 창구에서 실시해, 주민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제도 이행 후에는, 법무성(지방 입국관리국)과 시읍면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이, 별도로 시읍면에 신고를 하는 등의 부담이 적게 됩니다.

-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가 작성되어 일본인주민과 외국인주민등이 세대마다 편성되어 주민기본대장이 작성됩니다. 이것에 의해,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의 사본등이 발행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주민기본대장과 외국인등록법의 2개의 다른 제도로 파악하고 있던 복수국적세대(외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세대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기법에 근거하는 전입계등이 되었을 경우,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등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이는 것부터, 종래의 외국인등록제도에 비해 신고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이사 등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에 대해서는, 나라와 지방공공단체 및 개인이나 법인등에 의한 열람등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등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는, 외국인주민도 그 대상이 됩니다.



### 【주민기본대장】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등이 기재된 주민표를 세대마다 편성한 것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 처리의 기초가 됩니다. 「주민기본대장법」은 그 제도를 정한 법률입니다.

### 【외국인주민】

개정 후의 「주민기본대장법」에서는, 적법하게 3개월을 넘어 체류해, 주소를 가지는 외국인을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류카드 교부 대상자나 특별 영주자 등입니다.

### 【체류카드】

개정 후의 입국법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이, 우리 나라에서 중장기에 걸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상륙허가 등 체류와 관련되는 허가에 수반해 교부하는 카드입니다.

# 주민표가 작성되는 외국인과 주민표의 기재사항

아래의 표에 기재되어 있는 4개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소를 가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표를 작성하게 됩니다(관광등의 단기체재자 등은 제외함)또, 주민표에는, 일본인과 같이 오른쪽에 쓴 항목이 기재됩니다.

①이름·세대주의 이름 및 관계②출생의 연월일③ 남녀의 성④주소⑤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등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 외, 외국인 주민 특유의 기재로서 「①국적·지역 ②외국인주민이 된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분에 대해 각각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됩니다.

| 대 상 구 분                                | 대 상 자 의 내 용                                                                   | 기 재 사 항                                                                                                                          |
|----------------------------------------|-------------------------------------------------------------------------------|----------------------------------------------------------------------------------------------------------------------------------|
| 중장기체류 자<br>(체류카드 교부대상자)                | 3개월 이하의 체류 기간이 결정된 외국인이나, 단기 체재·외교·공용의 체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이외의 외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 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 기간의 만료 날, 체류카드의 번호</li> <li>중장기체류 자인 것</li> </ul>          |
| 특별영주자<br>(특별영주자 증명서교부 대상자)             | 입관특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특별 영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번호</li> <li>특별 영주자인 것</li> </ul>                          |
| 일시비호허가자<br>또는 가체재허가자                   | 입관법의 규정으로 일시비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나, 난민 인정 신청을 실시해, 임시로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것을 허가한 외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비호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륙기간, 또는 가체재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체재 기간</li> <li>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인 것</li> </ul> |
|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br>또는<br>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재자 | 외국인이 된 사유가 출생이나 일본국적의 상실로 인한 분(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0일까지의 사이는 체류 자격없이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에 의한 경과 체재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인 것</li> </ul>                                             |

※외국인등록법에 대해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던 국적에 속하는 나라에 있어서의 주소 또는 거주, 출생지, 직업, 여권번호등의 정보는 주민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주 의 점

### 현재 외국인등록이되어 있는 분

- 시행일까지,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한 변경, 또는 정정신청등을 통해서, 시읍면에서 가주민표의 수정이나 삭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체류 자격, 체류 기간의 변경은, 주민표의 작성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이기 때문에, 변경신청누락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시행일까지는, 현재의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 법시행 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 신제도 시행후는, 중장기 체류 자등이 국외로부터 전입했을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카드등\*을 지참해, 시읍면의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가 외국인주민인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공적인 문서가 일본어가 아닌 경우는, 그 번역문도 필요합니다)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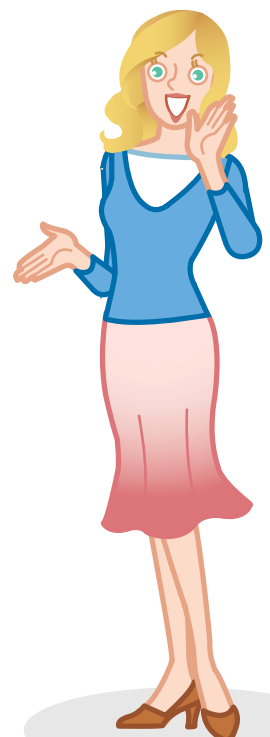
※그 밖에, 특별영주자 증명서, 가체재허가서, 일시비호 허가서, 후일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여권등이 있습니다.

### 법시행 후에 국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외국인에 대해

- 전출시에는 일본인과 같은 전출 수속이 필요하고, 전입시에는 전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소를 변경할 때,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어느 한쪽을 지참해 주십시오.

국외에 전출하는 경우는, 재입국허가를 얻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상 전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 외국인주민과 관련되는 주민기본대장제도



Q1

현재 일본에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떤 수속을 하지 않으면 주민표는 작성되지 않습니까?

A1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상 수속의 필요는 없고, 외국인등록원표에 근거해 가주민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의 수속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Q2

신규로 입국한 외국인은 어떠한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까?

A2

주소를 정한 후, 신주소의 시읍면에 입국시에 공항등에서 교부된 체류 카드등을 지참해, 전입신고를 해주시게 됩니다.

덧붙여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가 외국인 주민인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Q3

일본에서 출생 한 외국인은 어떠한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까?

A3

외국인이 일본에서 출생 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제도에서는 출생 신고가 제출되면, 주소지의 시읍면에 대해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로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덧붙여 경과체재기간의 60일을 넘어 일본에 체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있어 체류 자격의 취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사를 했을 때에는 외국인으로 전출신고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A4

신제도에서는 일본인과 같게, 외국인주민도 전출지의 시읍면에 전출계를 해 전출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후, 전입처의 시읍면에서 전출증명서를 더해 전입계를 하게 됩니다.



Q5

외국인의 남편(아내)과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주민표상의 세대주는 나 자신(본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세대주를 남편(아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5

가능합니다. 신제도에서는 외국인주민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되어 일본인과 외국인주민의 주민표가 세대 마다 편성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을 세대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Q6

외국인주민도 주기카드는 만들 수 있습니까?

A6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주민이 주기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것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예정이므로, 주기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후가 됩니다.

